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02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를 「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근거하여 징수하였으나, 부산시에서 해당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(07. 1. 31 공포, 07. 3. 1시행)하였으므로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함.

2. 주요골자

별표 1 구분란의 【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확인 등】에 제12호 신고체육시설업을 신설

○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20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7. 01. 11 ~ 01. 31(20일간) ▶ 제출된 의견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구분란의 【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확인 등】 중 제9-1호를 제10호로 하고, 제9-2호를 제11호로 하며,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,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신고체육시설업			
(1)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	1건	20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정안		
[별표 1] 제증명 등 수수료(제3조 관련)			[별표 1] 제증명 등 수수료(제3조 관련)		
구 분	기준	요액	구 분	기준	요액
[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,지정확인 등] 1.~9.(생 략) 9-1. 부동산중개업 관계 (1)~(3)(생 략) 9-2. 석유판매업 관계 (1)(생 략)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u><신 설></u></div>			[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,지정확인 등] 1.~9.(현행과 같음) 10. ----- (1)~(3)(현행과 같음) 11. ----- (1)(현행과 같음) 12. 신고체육시설업 (1)체육시설업신고 또는 <u>변경신고</u> 13. ----		1건 20,000원
10. 기타 (1)(생 략)			(1)(현행과 같음)		